

참고

조사 샘플 : 방글라데시 PPP 진출가이드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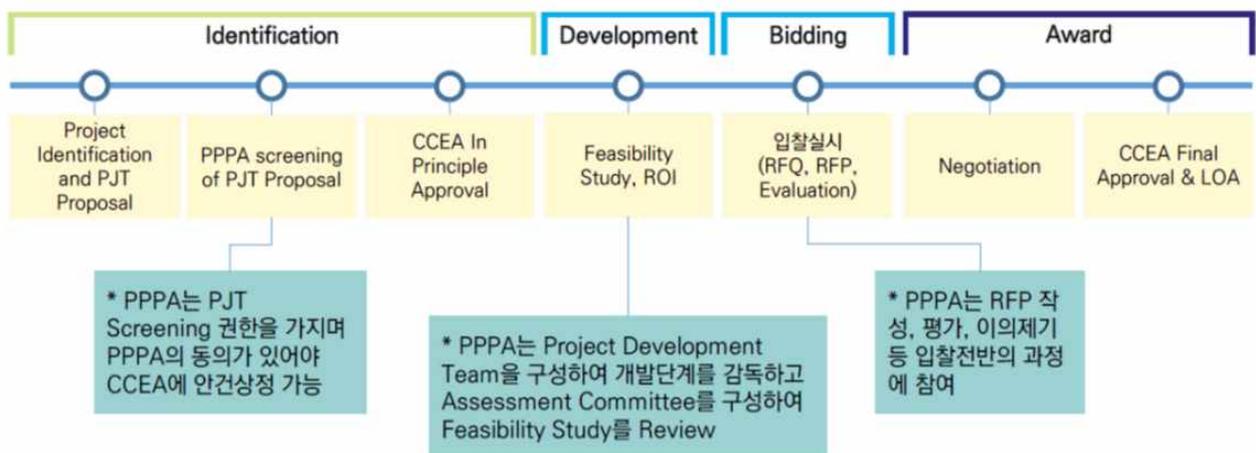
※ 10개국 진출 가이드 전문은 KIND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샘플과 같이 표와 이미지 등을 첨부해 가독성있게 개조식으로 작성

다. Procurement Guideline for PPP Projects 2018

- (근거법령) 민관협력사업의 진행 절차는 민관협력청 (Private-Public- Partnership Authority, PPPA)에서 승인한 민관협력사업 실행 가이드(Procurement Guideline for PPP Projects, 2018)에 따름.
- (목적) 민관협력프로젝트의 잠재적 성공 가능성 제고, 효율적인 실행, 그리고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에 지원하는 민간 투자자에게 적용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진행 절차) 방글라데시 PPP사업은 Identification, Development, Bidding, Award의 4단계로 구분
 - 확인 단계 (Identification Phase) : 주무부처가 작성한 PPP사업제안서가 경제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 CCEA)에서 승인될 경우, 해당 사업은 PPP사업으로 인정
 - 주무 부처는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PPP대상 사업을 선정해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제안서 작성 및 민관협력청(PPPA) 앞 사업제안서 송부
 - 민간에서도 사업제안서 및 기존 사업제안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민간제안사업(Unsolicited Proposal)의 심사 및 승인을 위해선 경쟁 제안 초청 및 제안서 비교 평가 필요
 - PPP청은 사업제안서 검토 및 평가 후 경제내각위원회(CCEA) 앞 송부
 - 경제내각위원회(CCEA)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승인
 - 개발 단계 (Development Phase) : PPP 사업으로 인정된 후, 사업실시기관은 민관협력청(PPPA)과 협력해 PD office 구성 및 사업타당성조사 실시

- 입찰 진행 단계 (Bidding Phase) :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입찰절차 진행
 - 각각 한 개 이상의 현지어 신문 및 영자 신문에 입찰공고를 게시해야 하며 사업실시기관, 주무부처 및 민관협력청(PPPA) 홈페이지에도 게시돼야 함.
 - 입찰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Single-Stage 또는 Two-Stage로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 방식 또한 QCBS 또는 CBS로 진행 가능
 - * QCBS(Quality and Cost Based Selection)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동시에 반영하여 선정
 - * CBS(Cost Based Selection) : 가격평가만 반영하여 선정
 - 동시에 사업실시기관은 평가방식에 대한 민관협력청(PPPA)의 동의 필요
 - 입찰 평가는 입찰평가위원회에 의해 실시되며 입찰평가위원회는 사업실시기관에서 2명, 주무부처에서 1명, 외부 전문가 1명, 민관협력청(PPPA) 추천인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됨.
- 승인 및 계약 진행 단계 (Approval and Award Phase) : 평가위원회는 우선 협상자와 협상 실시 후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법적 심사를 받은 후 경제내각위원회(CCEA) 앞 최종승인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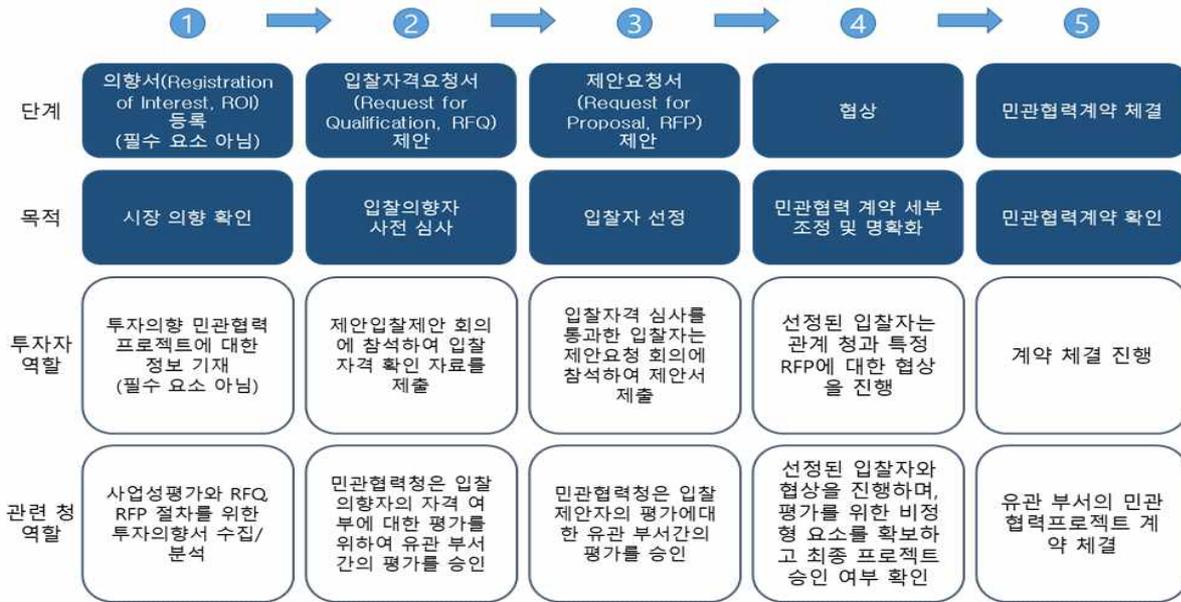
〈일반적 민관협력사업의 진행 절차〉



라. Guidelines for Unsolicited Proposals 2018

- (근거법령) 민간제안사업(Unsolicited Proposal) 절차 진행 시 민관협력사업의 실행 절차는 민간투자법(PPP Act, 2015) 내용에 따르며 민간제안사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Unsolicited Proposals, 2018)을 준수해야 함.
- (평가기관) 민간제안사업 평가기관은 방글라데시 경제내각위원회(the 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 CCEA)로, 민관협력프로젝트의 잠정승인과 최종승인 권한을 갖고 있음.
 -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경쟁 입찰 형식으로 진행
 - 민간제안사업자에게는 평가이사회에서 승인한 평가 점수의 7% 가점 부여
- (평가기간) 민간제안사업 민관협력프로젝트 승인 기간은 대상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 시장 의향/ 기타 요건(환경, 사회적 편익 평가)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각각 상이함.
 - 민간사업 제안자는 민관협력사업 실행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2단계 실행 절차(2 Stage Procurement) 혹은 단일 단계 실행절차(Single Stage Procurement)를 선택할 수 있음.
 - 2단계 실행 절차는 RFQ 단계 실행 후 RFP가 절차가 실행되는 반면, 단일 단계 실행 절차는 RFP 단계에서 RFQ 및 RFP 절차가 동시에 진행됨.
 - * 프로젝트별로 실행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각각 상이하지만, 주무 청의 RFQ 정식 발급까지 '2단계 실행 절차'를 거칠 경우 대개 16~20개월이 소요되며 '단일 단계 실행 절차'를 거칠 경우 10~12개월이 소요

〈민관협력사업 민간제안사업 실행 절차 상세〉



*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 Your Guide to PPP in Bangladesh

마. G2G Partnership Policy 2017

- (목적) PPP 사업추진 촉진을 위해 양자협약인 G2G Framework Agreement 및 MoU 체결 근거를 명문화하였으며, 양자협약을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명문화함.
- PPP 사업 추진을 위해 양자협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당 국가 기업들이 G2G 방식으로 방글라데시 PPP 시장에서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 G2G Framework Agreement 및 MOU는 사업시행자 선정, 제한 입찰, 공개 입찰 및 기타 적합한 프로세스를 포함한 투자자 선정 과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주요 조항(6조 4항)

- 6.4 The G2G Framework Agreement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ay include,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b. Selection process of the Investors, including the option for direct selection, limited tendering, open tendering and/or any other suitable selection process;

〈G2G Partnership Policy 2017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정식명칭	Policy for Implementing PPP Projects through Government to Government Partnership, 2017
제정일	2017. 06. 07
배경	양자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대형 인프라사업의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① G2G Partnership의 기본구조 ② G2G Framework, MoU 관련 사항 ③ G2G Partnership 실행 절차 ④ 적용대상 ⑤ 정부지원 Incentive ⑥ PPP사업 연계요소 관련 규정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

- (적용 대상) G2G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진행되는 민관협력프로젝트에 관한 세부 규칙으로, 대상 프로젝트는 민관협력법(PPP Act)에서 정의한 프로젝트의 정의 및 아래 요건에 부합해야 함.
 - 민관협력법(PPP Act)에서 정의한 PPP 프로젝트는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 새로운 시설에 대한 건설 및 운영이나 이미 존재하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건축을 포함.
 - 인프라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까지 포함.
 - 총 사업비용이 최소 200억BDT (2억3천만USD)이상인 사업으로 제한
 - 총 사업비가 200억BDT (2억3천만USD)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은 동 규모 이상의 후속사업을 위한 선행사업으로 한정
- (인센티브) 민관협력법에 따라 민관협력프로젝트에 부여되는 모든 재정적, 비재정적 유인책이 동일하게 부여됨.

- 민관협력법(Public-Private-Partnership Act, 2015)에 따르면, 민관협력사업 정부 재정지원 형식으로 5가지(기술지원 금융조달/ 사업이행자금(VGF) 조달/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에 대한 금융조달/ 연계부문에 대한 금융조달/ 민관협력청(PPPA)에서 결정하는 기타 활동에 대한 금융지원)를 명시

□ (개정안 주요 내용) 방글라데시 정부가 타 정부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에 금융조달을 실행하고 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선결 요건으로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술

- 민관협력프로젝트의 실행 및 지원을 위하여 방글라데시 정부가 타 정부와 직접적인 협력을 맺기 위함.
- 본 개정안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타 정부와 민관협력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상호 협의에 따른 합의서(Framework) 및 MOU를 체결
- G2G 합의서(Framework) 및 MOU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 규정에 절대적으로 국한되지는 않음.
 - 방글라데시 정부의 참여 정부 초청 방식
 - 타 정부의 참여 의향
 - 방글라데시 정부와 타 정부의 의사소통 방식
 - 투자자 입찰 및 선별 방식
 - 실행 프로젝트 관리 규칙 및 승인 과정
 - 사업성 평가에 책임을 갖는 정부 및 사업성 평가 시행 시기
 - 민관협력계약과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의 작성/협의/동의 방식
 - 민관협력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국가/국제적 법령 적용 방식
 - 프로젝트 수행 인력 구성
 - 분쟁 해결 방안

○ 민관협력청(PPPA)은 G2G 파트너십 민관협력프로젝트의 실행 및 체결을 위한 절차를 주관해야 함.

- 타 정부에게 G2G 규칙 및 민관협력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공유해야함.

- 또한, G2G 파트너십 합의안/MOU 내용이 타 정부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함.

○ 정부 간 합의서/MOU의 내용에 따라, 파트너십 체결 상대 정부는 공기관/주정부소유기관/ 민간기관, 그리고 동 기관들의 컨소시엄 금융조달 참여를 주선할 수 있음.

- 파트너십 체결 상대 정부가 주선한 컨소시엄(혹은 개별 단체)을 통하여, 방글라데시 정부가 민관협력프로젝트 특수목적회사에 자본출자 및 대출 실행

- 파트너십 체결 상대 정부 주선 컨소시엄(혹은 개별 단체(금융기관 포함))이 직접 민관협력프로젝트 특수목적회사에 자본출자 및 대출 실행

- 단독 혹은 다수의 투자자가 민관협력프로젝트 특수목적회사에 자본출자 및 대출 실행

- 상기 언급한 방식의 혼합된 방식의 실행

○ 방글라데시 정부가 G2G파트너십 관련 민관협력프로젝트에 직접 자본출자 혹은 대출 실행 가능

□ (G2G파트너십 실행 절차) 민관협력사업 실행 가이드라인과 정부 간에 체결된 합의서(Framework Agreement) 또는 MOU의 실행절차를 따름.

○ 프로젝트 진행 방식은 G2G파트너십 또는 개별 프로젝트 진행 중 선택 가능하나, 이는 입찰 단계(Bidding) 이전에 결정되어야 함.

○ 승인 기관 및 주관 기관은 일반 민관협력사업과 동일하게 각각 경제위원회 (CCEA) 및 민관협력청(PPPA)임.